

폴리프로필렌의 特許紛爭

—伊 本社와 日本企業間事件—

이탈리아의 몬테카티니會社は 1957년에 폴리프로필렌合成纖維를 工業化하였고 日本에서는 그 이전에 方法發明의 特許를 取得하였다. 日本에서의 特許權은 몬테카티니와 칼 티그렐의 共有로 되어 있다.

몬테카티니가 폴리프로필렌의 生産을 開始하자 日本에서는 三井化學, 三菱油化, 住友化學은 事實施權을 얻었으며 이때의 契約金 總額은 무려 300萬弗, 實施料는 販賣價格의 5%로 約定했다. 또한 이들 3社는 本社의 承諾下에 東洋레이온, 三菱레이온, 東洋紡績과 各各 再實施契約을 맺었다.

이와는 別途로 新日本窒素會社は 美아비잔會社와 技術導入을 提携하였으며 本社は 美國에서 特許를 얻지 않았으므로 美國內에서 問題는 일지 않았으나 日本內에서는 特許代理戰爭이 벌어진 셈이다.

또한 日本의 德山曹達會社도 別個의 폴리프로필렌生産方法에 관한 특허를 갖고 있었으므로 이 기술도 本社 기술과 紛爭이 벌어졌다.

新日本窒素가 아비잔과 技術提携契約을 맺은 것은 60年 5月이며 條件은 폴리프로필렌의 輸入 및 수입한 폴리프로필렌에서의 纖維와 其他 製品의 製造 販賣등이다. 이에 따라 同社는 폴리프로필렌製造計劃에 着手했다.

이때 몬테카티니는 輸入禁止假處分을 大阪地法에 申請했으며 그 內容인즉……

1. 新日本窒素는 아비잔法을 사용하여 生産한 폴리프로필렌을 수입해서는 안된다.
2. 수입한 것을 사용하여 폴리프로필렌을 生産해서는 안된다. 생산한것을 양도해서도 안된다.
3. 위의 폴리프로필렌을 사용한 纖維, 필름, 其他 加工製品을 生産해서는 안된다. 생산된 것들을 양도해서도 안된다.
4. 위의 폴리프로필렌 및 가공제품을 執達吏의 保管으로 옮긴다.
5. 집달리는 이 命令의 趣旨를 適當한 方法으로 公示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이 가치분신청은 4年동안 끄는 동안 新日本窒素는 1963년 4월 結論이 나지 않은채 폴리프로필렌의 生産판매와 가공제품도 제조에 착수했다.

한편 몬테의 기술을 쓰고 있는 三井化學, 三菱油化, 住友化學, 東洋레이온, 三菱레이온, 東洋紡績의 各企業은 新日本窒素를 制裁하고자 몬테카티니회사쪽의 爭訟에 補助參與하였다.

이 가치분사건의 鑑定人은 무려 12名이란 숫자이며 몬테카티니의 主張은 定石대로 아비잔의 기술은 몬테의 기술과 同一하므로 特許侵害가 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爭訟의 勝敗는 기술의 同一性에 있었다.

一般的으로 低分子化合物을 多數結合시켜 高分子化合物로 만드는 化學反應을 重合이라고 하며 이를 폴리프로필렌의 제조에 應用하면 石油精製의 副産物인 프로필렌을 중합시켜 폴리프로필렌이 生成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응용이 매우 어려워서 適切한 觸媒를 사용하지 않으면 중합할수 없으므로 그 촉매의 秘法이 發明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法院에서는 흔히 化學的發明이 紛爭의 실마리가 되었을 경우에는 原料인 出發物質에서부터 手段 그리고 生成物인 目的物質의 順으로 分析한다. 이를 發明要旨構成의 3要件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 爭訟으로는 원료와 생성물이 동일하며 프로필렌에서 폴리프로필렌을 만드는 것은 몬테기술이나 아비잔기술이 差異가 없다는 얘기가 된다.

문제는 수단인 촉매에 있었으며 化學反應의 촉매가 동일 또는 均等하느냐를 따지느라고 4년여를 消日했으며 特許爭訟의 實相도 여기에 虛無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1964년 12월 26일의 判決은 몬테기술과 아비잔 기술이 동일하지도 않으며 또한 이용하는 것도 아니므로 특허침해가 아니라고 判定했다. 결국은 몬테카티니의 가치분신청은 却下되고 新日本窒素는 勝訴에 이르렀다.